

의안번호	2218604
의 퇴 인	김기웅의원
회 답 일	2026.4.29.
추계번호	26B234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함(제1항)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의무규정
2	안 제9조의6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공개하여야 함. 다만, 취약계층이용시설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적용대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의6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 상세 사유

□ 적용대상의 확대 (안 제3조)

- 개정안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¹⁾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추가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측정²⁾,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도검사 대상 시설 확대 등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는 2024년 기준 총 70,455개소임
- 현행법 제13조제1항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

1)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도 검사율은 2024년 기준 4.5%임

- 2024년 기준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수는 55,472개소이며, 이 중 2,520개소에 대하여 오염도검사가 이루어졌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여가시설의 규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노인여가시설의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9조의6)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측정기기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규모와 측정기기·공기정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 단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